

2016년도 재산세 납부 안내

2016년 8월 5일과 2016년 8월 16일에 중앙세무서에서 발행된 Notification 12723 과 Notification 13466 에 따르면 모든 재산세 납부에 해당되는 토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. 미납 또는 지연납부의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더불어 중앙세무서는 Notification 13466 에 따르면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관할 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해야 된다고 합니다.

- 소유주의 신분증 또는 여권
- 소유주의 거주지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등본
- 토지의 점유권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
- 토지 매매 계약서
- 전기 수도 고지서

이미 등록이 된 토지는 2015년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
SM 회계법인에서는 재산세 산출부터 등록, 납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

연락처: 092-990-853 / parkhb92@smacct.com (박현빈 대리)